

- 6) 동반휴직(10호):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7) 자율연수휴직(12호):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 이내(단,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4. 청원휴직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 1)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 고용휴직, 국내연수 휴직, 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예: ○개월 이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을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유학·고용·연수·동반휴직은 경기도의 교원 수급사항, 기간제교사의 증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 2) 유학휴직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며, 특별한 경우 심사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특히, 유학휴직은 복직 후 경기교육정책 실현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바, 복직 후 반드시 의무복무(휴직기간과 같은 기간)를 하여야 한다. 유학휴직기간과 같은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복무할 수 없다고 하여 의원면직을 청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다만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교원수급 수급사항, 기간제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국제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부 요일만을 특정하여 고용계약하여 실질적으로 전임으로 근무한다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예: 한글학교, 시간제 근무),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연속한 고용휴직 기간 또는 고용휴직에 이어 다른 휴직, 파견 등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복직·복귀하기 전의 고용휴직 총 기간)에는 복직 후 일정기간(최소 1년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직을 할 수 있다. 기타 상기 기준 외의 사유로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에 대한 해석: 학교에 복직하여 일정기간(최소 1년이상) 근무하기 전까지의 고용휴직 총기간이 5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휴직기간이 5년 연속되는 경우는 물론 고용휴직에 이어 다른 휴직, 파견 등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복직·복귀하기 전의 고용휴직 총기간이 5년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용휴직 3년을 한 후 이어서 동반휴직 1년을 하고 다시 고용휴직 2년을 하였다면 이는 고용휴직 연속 5년에 해당되어 더 이상의 고용휴직은 불가하다. 따라서 이 경우 연속이 아니므로 동반휴직 이후의 고용 휴직부터 기산하여 추가로 고용휴직을 3년 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휴직기간 산정의 혼란과 악용의 우려를 없애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임.